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인사혁신처 소관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목 차 】

I.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II. 심사경과	1
II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13
V. 대체토론 요지	35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5
VII. 심사결과	35
VIII. 소수의견의 요지	35
IX. 부대의견	35
<첨부자료>	36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
행정안전위원회

I.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연금기금

I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9월 3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상정·예비심사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상정·예비심사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예비심사·
원안의결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원안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수입·지출의 개괄적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부상, 질병, 장애를 당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과 함께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설치되었음.

정부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중이나, 기금 운영 상 공단 내부적으로 사업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 자체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10개 회계(연금회계,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대여학자금특별회계, 금융자산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사업특별회계, 융자사업특별회계, 고객지원특별회계, 기금운영회계)로 세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각 회계별 수입액으로 비용 지출 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금융자산회계로 이관하여 운용·관리하고, 부족시 금융자산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 회계별 사업현황

회 계	사 업	내 용
연금회계	연금사업	공무원·국가 등으로부터 기여금·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연금수급자 및 퇴직자에게 퇴직급여 등으로 지급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재해보상사업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 시 유족보상금 등 공상급여 지급 - 재해로 인해 주택손실을 입거나 공무원 본인 등 사망 시 부조급여 지급
대여학자금특별회계	학자금대여사업	공무원 본인·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금융자산회계	금융자산운용사업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 등 금융상품에 투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건립·임대하여 공무원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
시설사업특별회계	시설운영사업	경쟁력있는 후생복지시설(호텔, 골프장 등)을 운영하여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융자사업특별회계	공무원연금대출사업	가계자금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안정
고객지원특별회계	고객지원사업	-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은퇴교육 - 퇴직 후 봉사활동을 통한 공직경험의 사회 환원 지원 - 공무원연금지 제작
기금운영회계	기금운영지원업무	기금 관리운영업무 지원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규모는 2025년의 33조 7,737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35조 1,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수입·지출	337,737	351,619	13,882 (4.1%)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의 약 80%는 법정의무지출인 연금사업과 재해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의 경우 전체 수입액 35조 1,619억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과 보전금이 21조 7,218억원(61.8%), 공무원의 기여금이 7조 1,441억원(20.3%)으로 나타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지출은 28조 6,455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81.5%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기타 수입과 지출은 기금의 자산증식과 공무원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융자금원금회수 및 여유자금 회수 수입이 4조 7,784억원

(13.6%), 재산수입 및 잡수입이 1조 5,176억원(4.3%)이며, 학자금 등
 용자사업 지출이 9,230억원(2.6%), 주택·시설사업 및 기금운영비 관련
 지출이 6,030억원(1.7%), 여유자금운용이 4조 9,904억원(14.2%) 편성되
 었음.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수입구조]

(단위: 억 원)

항 목	국가·자치체의 부담금·보전금	공 무 원 의 기 여 금	재 산 수 입	용자원금회수 여유자금회수	합 계
금 액	217,218	71,441	15,176	47,784	351,619
비 중	61.8%	20.3%	4.3%	13.6%	100.0%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지출구조]

1.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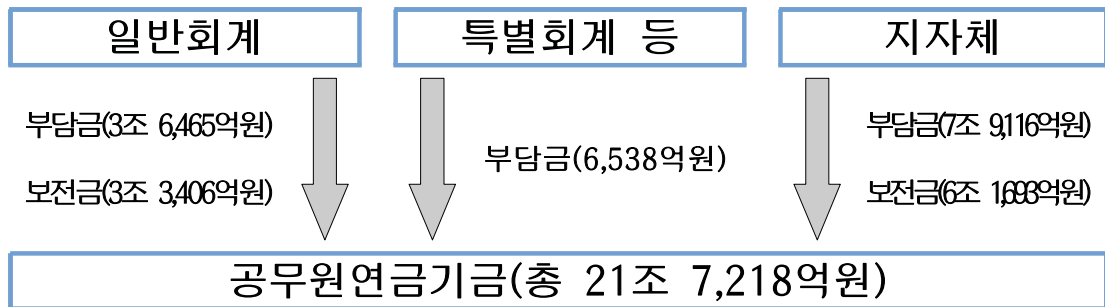
항 목	연 금 급 여	학 자 금 등 용 자 사 업	주 택 · 시 설 사 업 등	여 유 자 금 운 용	합 계
금 액	286,455	9,230	6,030	49,904	337,737
비 중	81.5%	2.6%	1.7%	14.2%	100.0%

3. 기금의 전입·전출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의 다른 회계·기금·지자체와의 거래를 보면,

다른 회계·기금·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의 경우 연금부담금,¹⁾ 대여학자금부담금 등²⁾의 부담금 항목과 보전금³⁾ 항목이 있는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총 6조 9,871억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6,538억원, 지자체로부터 14조 809억원 등 총 21조 7,218억원이 전입될 계획임.⁴⁾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입금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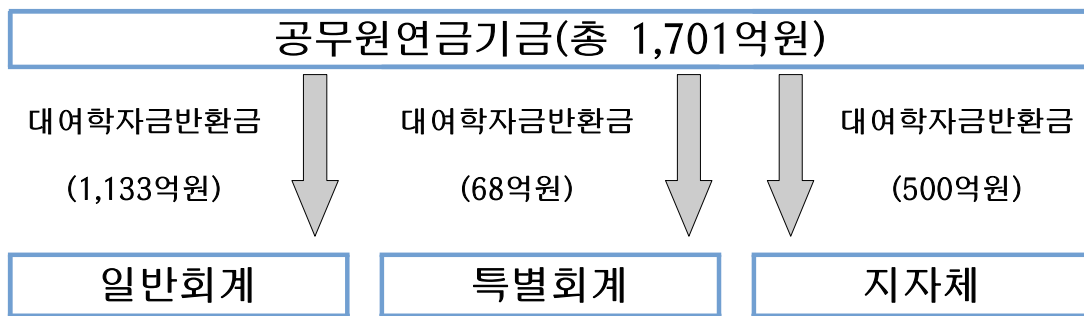


- 1)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
- 2)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포함.
- 3)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납부하는 금액
- 4) 회계-기금 간 거래시에는 기금운용수익으로부터의 기금전입금 충당금(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을 보전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어 보전금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여학자금반환금 총 1,70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8항⁵⁾ 및 관련 훈령에⁶⁾ 따라 기금운용수익 중 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의 경우, 2024년의 결산상 현금수익(3,895억원)의 30%인 1,168억원을 2026년 기금전입금으로 계상함.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계획안]



5)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 +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 × 기금전입률

4. 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는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가한 35조 1,619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기여금과 자치단체연금부담금인 연금수입에서 8,041억원, 직원 대부금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20억원 증액되었고, 임대주택 및 회관 임대수입 등 관유물 대여료에서 5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744억원, 융자원금회수에서 47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 및 재산수입에서 394억원, 관유물매각수입에서 429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입대체경비수입에서 11억원이 감액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국가부담 보전금에서 508억원, 국가부담 부담금에서 4,012억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자체수입	231,365	239,016	7,651	3.3	-
- 연금수입	204,209	212,250	8,041	3.9	기여금, 지자체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	20	순증	직원 대부금 회수
- 관유물대여료	6,762	6,757	△5	△0.1	임대주택 및 회관 등 임대 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66	1,322	△744	△36.0	주택 및 시설운영수입
- 융자원금회수	12,063	11,590	△473	△3.9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이자 및 재산수입	4,144	4,538	394	9.5	금융자산 및 연금대부이자수익
- 관유물매각수입	2,062	2,491	429	20.8	부동산 및 임대 주택 매각
- 수입대체경비수입	59	48	△11	△18.6	은퇴지원교육수입
정부내부수입	71,889	76,409	4,520	6.3	-
- 보전금	32,898	33,406	508	1.5	국가분 부담금
- 연금부담금	27,945	29,415	1,470	5.3	국가분 부담금
- 퇴직수당 부담금 등	11,046	13,588	2,542	23.0	국가분 부담금
금융자산 회수	34,483	36,194	1,711	5.0	채권·주식 등 회수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 편성 규모는 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와 같은 35조 1,619억원으로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사업에서 1조 7,839억원, 주택사업에서 423억원, 시설운영사업에서 36억원, 고객지원사업 및 금융자산운용경비에서 20억원, 회계기금간거래에서 544억이 증액된 반면, 대부사업에서 355억원, 금융자산 운용에서 4,64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 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사 업 비	281,799	299,762	17,963	6.4	-
- 연금사업	268,616	286,455	17,839	6.6	연금 및 재해보상급여
- 대부사업	8,384	8,029	△355	△4.2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주택사업	3,814	4,237	423	11.1	주택관리·임대주택건설
- 시설운영사업	838	874	36	4.3	지부시설·복지시설운영
- 고객지원사업	125	145	20	16.0	은퇴지원교육,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공무원 재해예방·재활사업
- 금융자산운용	22	22	-	-	자금운용 및 금융자산투자 경비
기금운영비	729	750	21	2.9	기금관리 운영비
- 인건비	553	577	24	4.3	인건비, 퇴직금
- 일반경비	175	173	△2	△1.1	관리운영비, 정보화경비 등
차입금상환	2	2	-	-	금융기관 단기 차입금 이자
회계기금간거래	657	1,201	544	82.8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국가분)
금융자산 운용	54,550	49,904	△4,646	△8.5	채권·주식·대체투자 등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3) 공무원연금수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개인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률은 연차적으로 0.25% 인상되어 9.0%에 이르면서 기금의 수입은 늘고 같은 기간 퇴직급여에 물가인상률 적용이 유예되어 지출은 제한되었으나,

2021년부터 퇴직급여인상률이 적용되어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기여율과 부담률은 동일하여, 2026년 퇴직급여 수지차는 9조 3,214억 7,500 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금수지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5년 계획(A)	'26년 계획안(B)	증감(B-A)
I. 수 입	14,918,762	15,634,764	716,002
○ 기여금	6,734,615	7,011,969	277,354
○ 연금부담금 등	8,125,229	8,505,948	380,719
○ 기금전입금	58,918	116,847	57,929
II. 지 출	23,598,568	24,956,239	1,357,671
○ 퇴직연금	22,854,884	24,322,262	1,467,378
○ 퇴직일시금 등	743,684	633,977	△109,707
III. 수지차	8,679,806	9,321,475	641,669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 출>

8.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 동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346,551	267,900	237,900	△30,000	△11.2

나. 대여학자금융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 대여학자금융자는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⁷⁾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융자사업 중의 하나로,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7)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금액·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대출은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년에서 4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공단에서는 대여학자금수요를 감안하여 3,384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운영 현황(2025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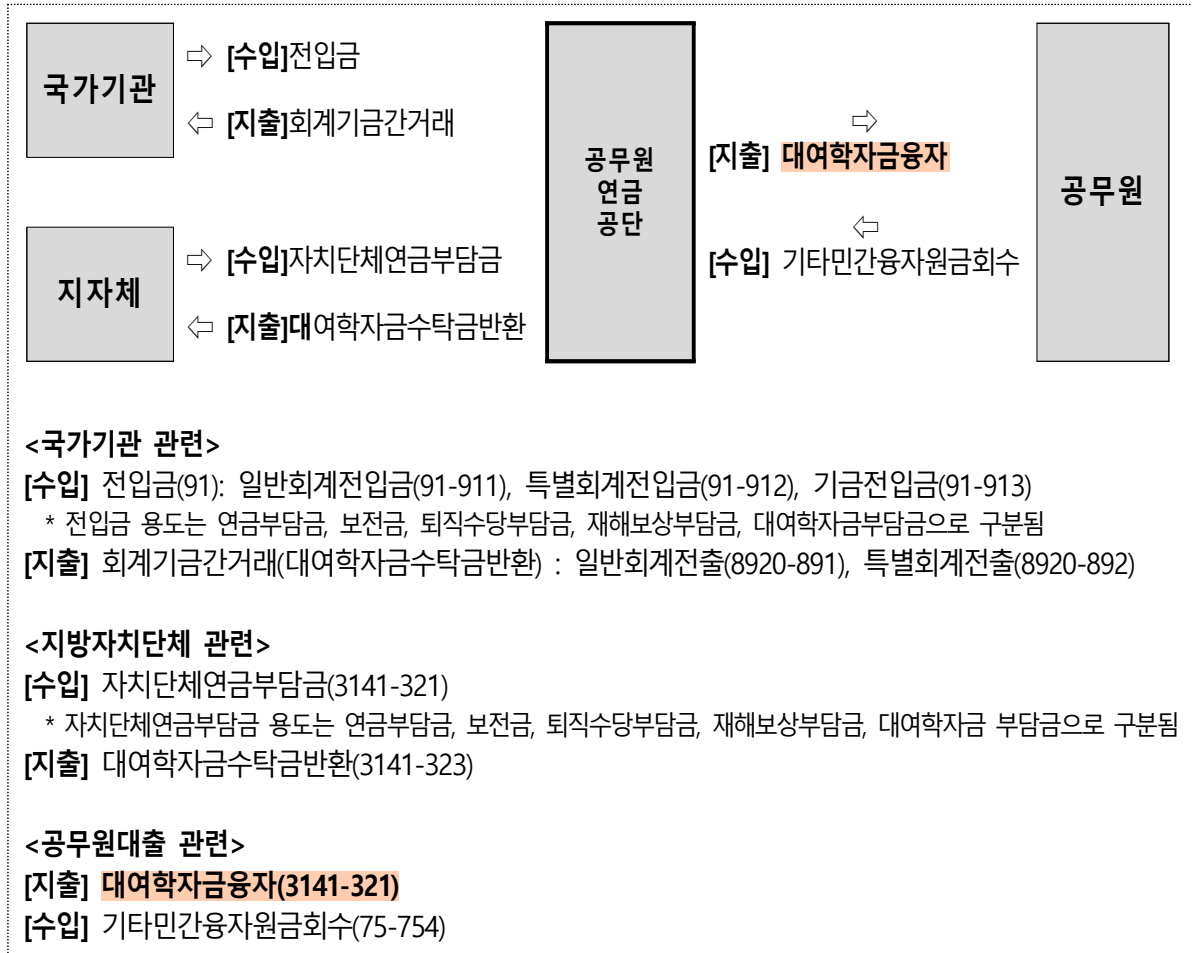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역		
대부규모	○ 연 2,679억원 규모		
대부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공무원 배우자 제외		
대부조건	구분	국내대학	해외대학
	대부금액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 실등록금 :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연 \$10,000이내에서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 4년제는 총 \$40,000, 6년제는 총 \$60,000 가능
	신청횟수	학기별 신청(연 2회)→총 12회	횟수제한 없음
	대부제외	대학원, 직업훈련기관,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이 아닌 교육비	비학위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대부이율	○ 무이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8)		
대부한도	○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대부 가능 ※ 예상 퇴직금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인증서 필요) ※ 불가피한 경우 해외 대학은 수기 신청도 가능		
대부금 지급 및 상환	○ 대부 심사 후 본인 계좌로 3일 이내 입금 ○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상환방법	○ (재직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복직 후 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 2자녀 이상 공무원은 학자금 상환 유예 ○ (퇴직자) 퇴직급여(공제일시금, 퇴직수당)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 공제 또는 연금월액 분할 상환 ○ (재임용) 재직자로 고지 전환하되, 퇴직 시 결정한 연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 상환 연체 시 연체료 부과		

자료: 인사혁신처

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학자금 대여 관련 예산 흐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그런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여학자금용자 사업의 계획액은 2021년 4,146억원에서 2025년 2,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왔으나, 집행액은 3,400억원에서 3,800억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하여 2023년부터는 부족분 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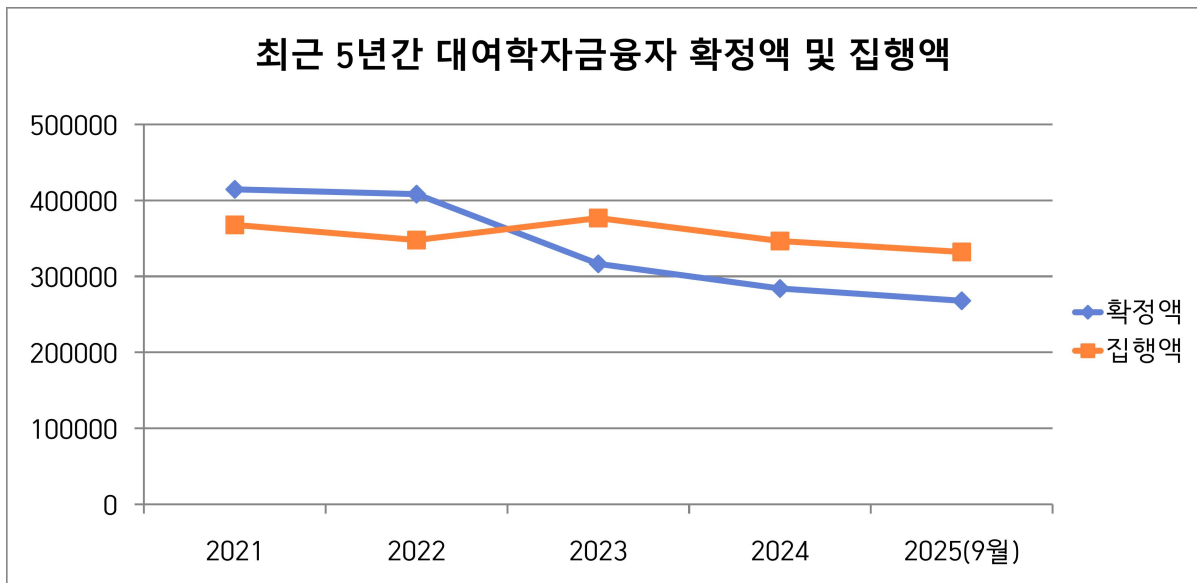
《최근 5개년간 대여학자금 실수요 대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요구	심의.확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확정액	삭감액	증감	최종			
2021	420,906	414,565	△6,341	△45,600	368,965	367,798	99.7%	1,167
2022	408,258	408,258	-	△60,000	348,258	347,847	99.9%	411
2023	354,646	316,491	△38,155	78,719	395,210	376,801	95.3%	18,409
2024	394,649	284,065	△110,584	70,164	354,229	346,551	97.8%	7,678
2025.9월(*)	350,206	267,900	△82,306	74,580	342,480	332,672	97.1%	-

* 계획대비 건수 및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용자 예산 부족으로 자체변경(25.6.2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장학금 확대 정책 등으로 향후 대여학자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집행액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학자금 대여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계획안이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예년의 사례를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정되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예산 및 기금계획은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과소편성한 후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증액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사업은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대여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대여학자금 수탁금⁹⁾을 반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82,498	40,500	50,000	9,50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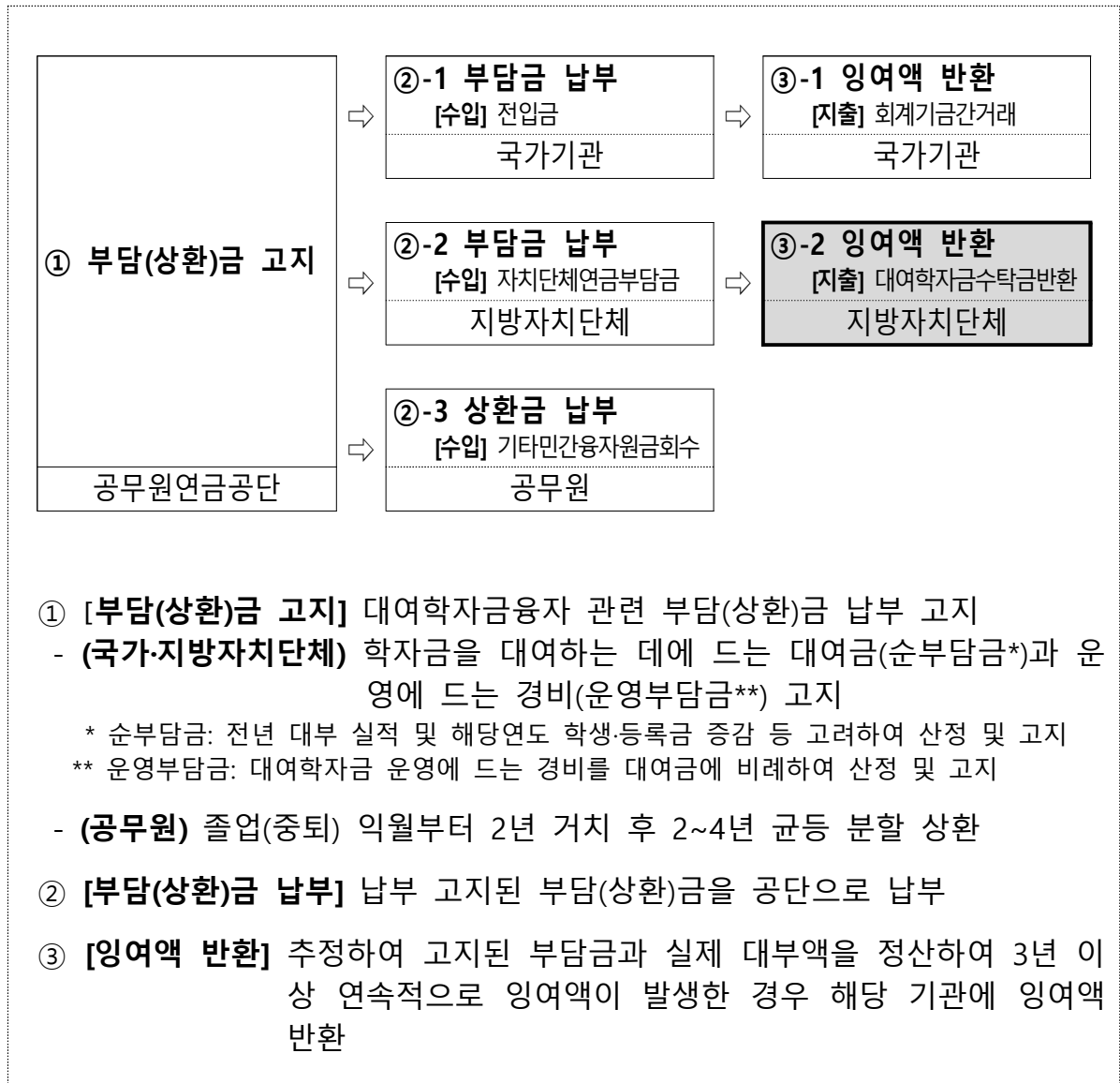
9)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나.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규모 확대 필요

-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부가 이루어진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액을 반환하는 사업임.
- ☐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전입금:수입)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연금부담금:지출)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 대여(대여학자금용자:지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부터 학자금이 상환(기타민간용자지원금회수:수입)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기관(회계기금간거래:지출) 및 지방자치단체(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지출)에 각각 반환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용자 부담(상환) 절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학자금수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환액이 대부액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2026년도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금액을 4,851억 8,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500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수탁금 잉여액 반환 기준》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음.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2026년 지자체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요구액(485,183백만원)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4년 부담금 정산액 (A)	'25년 대부 예상액 (B)	'25년 수탁금 반환액 (C)	잉여 발생액 (D=A-B-C)	'25년 상환 예상액의 25% (E)	잉여 반환금 (F=D+E)
611,602	166,362	40,492	404,748	80,435	485,18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서는 2022년도 국회 시정요구¹⁰⁾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2025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반환 규모가 4,852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확정된 예산액은 500억원에 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수탁금 잉여금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한 수탁금 잉여액 해소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10)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도한 수탁금 잉여금 해소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수탁금 반환액 및 예산확정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수탁금 반환 예정액	1,580	2,595	2,326	1,650	4,062	4,852
수탁금 반환 확정액	1,580	1,595	1,304	825	405	500
수탁금 잉여금	6,073	6,012	5,851	6,090	6,755	7,807

* 수탁금 반환 예정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따라서,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주택사업관리(3151-333)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있어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택사업관리 사업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원활한 반환 및 임대주택의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6억 800만원이 감액된 3,42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B-A)	%
주택사업관리	421,788	358,141	342,533	△15,608	△4.4

나.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임대보증금 편성 필요

- 주택사업관리 예산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주택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내역》

내역	비목	세부용도
주택임대보증금	반환금및손실금 (710-03)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10-01)	부동산관리비, 지급수수료 소송비, 분양주택판매비, 영업비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금공과,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유지비, 분양주택관리사업비
	일반용역비 (210-14)	세종시 뉴홈 사전타당성 조사,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도입
	무형자산 (440-00)	관리비에치금, 임차보증금

자료: 인사혁신처

-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이 3,285억 5,500만원에서 3,085억 5,500만원으로 200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축단지·신규매입·매각단지를 제외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주택의 세대수가 감소(2,589→2,402세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임.

《2025년도 및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정상운영: 2,589세대×111백	287,347	정상운영: 2,402세대×111백	266,665
신축단지: 71세대×360백	25,568	신축단지: 111세대×365백	40,496
신규매입: 28세대× 63백	1,764	신규매입: 19세대× 63백	1,199
별내분양: 124세대×111백	13,876	매각단지 : 5세대× 39백	195
합계	328,555	합계	308,555

자료: 인사혁신처

□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23년에는 3,675세대에 대하여 4,066억 3,800만원, 2024년에는 3,444세대에 대하여 3,884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주택임대보증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결산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23년	3,571	379,690	3,930	407,591	359	27,901	3,675	406,638
'24년	3,061	307,475	3,319	388,456	258	80,981	3,444	388,452
'25년	2,812	328,555	3,265	381,528	453	52,973	2,758	322,610

※ '25년 결산은 10월 말 실적 반영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주택임대보증금의 집행 추이와 주택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역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임.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 고객지원사업(3162-302)

- 연금지인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은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웹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고객지원사업은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현직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연금지 제작, 연금담당자 교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재해예방·재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96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고객지원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B-A)	%
고객지원사업	7,774	8,374	9,661	1,287	15.4
연금지 제작	2,258	2,258	2,323	65	2.9
연금담당자 교육 등	405	530	476	△54	△10.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823	1,327	1,209	△118	△8.9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2,625	2,381	2,522	141	5.9
재해예방·재활사업	1,663	1,878	3,131	1,253	66.7

나.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 활성화 필요

□ 연금지 제작은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연금 및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유료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7월 창간 이래 매월 「공무원연금」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월간 「공무원연금」은 연금정보, 건강·경제·생활정보 등 맞춤형 콘텐츠와 독자참여 코너를 통해 노후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과 공단 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월간 「공무원연금」 개요(1984.7월 창간)》

구 분	주요 내용
정기구독자	연금수급자 약 189,000명 ※ '24.12월 기준 연금 수급자 695,732명 중 27.2% 구독
발간 주기/ 부수	매월 (연 12회) / 월 192,000부 내외
구독료	연 12,000원(월 1,000원)
규 격	가로 180mm × 250mm, 84면 (표지 4p, 내지 80p)
배 포	정기구독자(189,000부), 유관기관(2,000부), 재발송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온라인 중심의 정보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4대 연금기관이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간행물의 발간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종이 간행물 발행을 중단하고 웹진¹¹⁾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사학연금은 종이 간행물과 웹진 발행을 병행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기관지를 발행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4대 연금 기관지 및 웹진 발간 현황 비교표》

(단위: 세대, 백만원)

연금 (기관)	기관지명	웹진	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 (종이 발행 중단)	• 분기별 발행 • 2022년 웹진으로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X (종이 발행 병행)	• 월간 발행 • 종이 간행물(PDF 포함) 발간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월간 사학연금	○ (종이 발행 병행)	• 격월간 발행 • 2020년부터 반응형 웹진(*)과 종이 사보를 함께 발행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	X	X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연금 소식',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반응형 웹진: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에 맞춰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자동으로 변하는 웹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ESG경영¹²⁾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으로 인한 발간비용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발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11) 웹진은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 출판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를 말함. 기존 종이 잡지와 달리, 동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고,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12)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ESG경영은 기업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말함

- 이러한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저감 및 발간 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는 월간 「공무원연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진 형태로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월간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 개요》

□ 추진 배경

- 구독자의 평균연령 고령화로 신규 퇴직공무원 구독층 확대 및 출판문화 트렌드(웹진, 오디오북) 반영 등 발간 지속성 확보 필요
- 공공기관 ESG 경영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원자재, 우편료) 등 발간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3년도 경영평가 지적) 책자 발행으로 종이 소모, 배송을 위한 탄소배출 발생
 웹진 구독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발행 규모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 필요
 → 주 고객층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 점진적 디지털 전환 추진 예정

□ 운영 방향

- 월간「공무원연금」을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도록 웹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 (고객) 파일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서 구독 가능(접근성·편리성 강화)
 - (직원) 콘텐츠 추가 및 실시간 수정 등 관리 편리성 제고
- 웹진 연계한 주요 콘텐츠를 고객 이메일과 문자(카카오톡)로 발송
 - 이메일 또는 문자 수신 동의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 예정
- 월간「공무원연금」정기구독자 대상 「웹진」서비스 홍보
 -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으로 「웹진」이용 기회 제공
- 고객 소통 채널을 활용한 신규 연금수급자 웹진 구독 유도
 - 공단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연금지(책)에 웹진 발간 홍보
 -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각종 안내 자료에 웹진 구독 방법 등 게재 및 사전 퇴직지원교육 시 웹진 신청 유도 등

□ 소요예산 : 1억 5000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웹진 발간은 최근의 이용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연금수급자의 연령 특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의 편차를 감안하여 종이 형태의 유인물 발간을 병행하되, 웹진 이용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웹진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수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V. 대체토론 요지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가. 수입 : 원안의결

나. 지출 : 원안의결

- 증액 : 해당사항 없음

- 감액 : 해당사항 없음

VII. 심사결과

가. 수입 : 원안의결

나. 지출 : 원안의결

- 증액 : 해당사항 없음

- 감액 : 해당사항 없음

VIII.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IX. 부대의견

없음

<첨부자료>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I.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수 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 출

- 해당사항 없음

II.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 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 출

- 해당사항 없음

< 부 대 의 견 >

- 해당사항 없음